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예규

■ 국민연금전환금과 관련된 회계처리
(108－260 : '93. 2. 8)

❖ 질 의 ❖

국민연금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'93. 1. 1부터 퇴직금전환금중 일부를 국민연금사업의 갹출료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바, 이의 회계처리방법은?

❖ 회 신 ❖

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전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.

1.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47조의 2, 동 부칙('90. 3. 29 개정) 제5항 및 관련예규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전액을 설정합니다.

2.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은 이를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.

[회계처리 예시]

·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

(차) 퇴직급여충당금 ××× (대) 퇴직급여 ×××
전입액 충당금

· 퇴직금전환금 납부시

(차) 국민연금 ××× (대) 현금과 예금 ×××
전환금

[대차대조표 표시 예시]

고정부채중	퇴직급여충당금	×××
	국민연금전환금	×××
		×××

■ 상장회사 DATA BASE의 제공 및 이용안내

본회는 지난 '84년부터 상장회사 재무제표 등 관련 주요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"상장회사 DATA BASE"를 완성하여 지난 '87년부터 증권회사 및 부설연구소 등 상장회사에 관한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기관들이 보유 Computer를 활용 · 이용할 수 있도록 Magnetic Tape에 수록 · 제공하고 있으며 '91년부터는 동 전산수록 내용을 대폭 확충하고 체제를 개선함과 함께 신규자료의 신속한 입력과 수록자료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증권관계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, 경제연구소, 관련학계 등 상장회사 D.B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